##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	2005-15
번호	

제출일자	2005. 3. 17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 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명칭을 변경함

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⇒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

- 나.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함
  -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-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다. 위촉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:  $1년 \Rightarrow 3년$

## 4. 주요토의 과제 : 없음.

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, 세무과
- 라. 기타
  - 1) 신·구조물 대비표 : 따로붙임.
  - 2) 입법예고(2005. 2. 14 ~ 2005. 3. 8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###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

제1조중 "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"를 "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1조"로 하고, 같은조중 "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"를 "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"로 한다. 제2조제3항 본문 및 같은조같은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같은항 제2호중 "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"를 "건축사 등 부동산

- 가격에 정통한 사람"으로 하며,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"자"를 "사람"으로 한다. 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·도시건축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- 1.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제4조 본문 및 같은조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3.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중 "1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제10조중 "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"를 "「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"로 하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   제명 :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	제명 :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
제1 <b>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<u>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</u>	<b>제1조()</b> <u>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</u>
<u>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</u> 의 규정에 의한 <u>사천시</u>	에 관한 법률 시행령 <u>,</u> 제51조사천시
<u>토지평가위원회</u>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	부동산평기위원회
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  제2조(구성) ① (생 략)	<b>제2조()</b> ① (현행과 같음)
(2) (생 략)	(2) (현행과 같음)
③ ( 0	
	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
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	
추하는 자로 한다.	
19 C / L C / L	
1.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	1.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
<u>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</u>	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
	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
	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
0 버충가 보도시켰고고그스 기바게므니ল	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2. 변호사, 부동산학전공교수, 지방세무서평 가담당공무원, 한국감정원직원, 감정평가	2
사, 부동산중개업자, 농협직원 등 당해지	
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	정통한 사람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<u> </u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<u>에</u>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1. (생 략) 2. (생 략) <신설> <신설> <신설> <신설>	제4조()
제5조(임기)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	체5조()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1조(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) ①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같다)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

제2조 (정의) 이 법에 있어서 "비영리민간단체"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.

- 1.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- 2.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
- 3.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· 운영되지 아니할 것
- 4.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
- 5.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
- 6.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